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서울캠퍼스 입학처

Web iphak.khu.ac.kr
Tel 1544-2828
Fax 02-961-0049
E-mail khsa0035@khu.ac.kr
Address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국제캠퍼스 입학처

Web iphak.khu.ac.kr
Tel 1544-2828
Fax 031-204-8105
E-mail iphak@khu.ac.kr
Address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2024

CONTENTS

전형 일정 및 합격자 발표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원서접수 및 전형료 안내	7
전형별 안내: 지원자격·전형방법·동점자 처리 기준·제출서류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9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6
북한이탈주민	21
서류제출 유의사항	24
지원자 유의사항	26
재외국민특별전형 관련 FAQ	28
제출 서류 양식	
사유서	31
캠퍼스 및 교통 안내	32

1. 일정 안내[지원자 공통]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온라인]			2023. 7. 3(월) 10:00~5(수) 18:00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 전형료 결제(원서접수 완료) 후 모집단위 변경 및 접수 취소 불가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23. 7. 3(월) 10:00~7(금) 17:00	• 우편 제출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 - 2023. 7. 6(목) 등기소인까지 인정 • 방문 제출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 방문 - 제출 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3. 7. 13(목)~14(금)	• 경희대학교 입학처(iphak.khu.ac.kr),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지원자 본인이 직접 확인(유선확인 불가)
최초합격자 발표			2023. 8. 25(금) 18:00	• 합격자 확인 및 합격증 출력 - 최초, 1차: 개별 통보하지 않음 - 2차 및 이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경희대학교 입학처(iphak.khu.ac.kr) · 경희대학교 (www.khu.ac.kr) ※ 총원합격자 발표는 <재외국민(해외근무자 자녀)전형> 및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한외예과'에 한함 • 합격자 유의사항: 3쪽 참조 • 지정된 등록 기간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는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포기 처리함 • 온라인 문서등록 방법: 3쪽 <온라인 문서등록 방법> 참조
최초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2023. 12. 18(월)~21(목) 13:00	
총원 합격자	1차	발표	2023. 12. 22(금)	
		등록	2023. 12. 22(금)~23(토) 13:00	
	2차	발표	2023. 12. 23(토)	
		등록	2023. 12. 23(토)~24(일) 13:00	
	3차	발표	2023. 12. 26(화)	
		등록	2023. 12. 26(화)~27(수) 13:00	
	최종	통보 마감	2023. 12. 28(목) 18:00	
		등록	2023. 12. 29(금) 13:00	
본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2024. 2. 7(수)~13(화) 13:00	• 본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본 등록금 납부: 하나은행 전국지점 •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본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함
최종합격자 추가 서류제출			2024. 2. 23(금)까지	•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로 우편 제출 • 2024. 2. 23(금) 등기소인까지 인정 • 4쪽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참조

※ 전형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학 관리는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속한 캠퍼스별로 진행됩니다.

2. 전형별 고사 일정 안내

가. 재외국민(해외근무자 자녀) [전 모집단위]		
구분	일시	비고
고사장 확인	2023. 7. 13(목) 18:00	•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
필답고사	2023. 7. 15(토) 09:00~11:30 [08:30까지 고사장 입실 완료]	• 대상: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전 모집단위] •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에서 각각 시행 • 수험표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26쪽 <필답고사 관련 유의사항> 참조

나.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 모집단위(한의예과 제외)]

구분	일시	비고
비대면 면접 질문 사전공개	2023. 7. 10(월)	• 경희대학교 입학처(iphak.khu.ac.kr)
비대면 면접고사 (동영상 업로드)	2023. 7. 11(화) 10:00~13(목) 17:00	• 대상: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전 모집단위(한의예과 제외)] • 비대면 면접 (동영상 업로드) • 캠퍼스 방문 면접 불가 • 27쪽 <면접고사 관련 유의사항> 참조 • 지정된 기한 내 영상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접고사 결시로 불합격 처리

다.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한의예과]

구분	일시	비고
고사장 확인	2023. 7. 13(목) 18:00	•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
면접고사	2023. 7. 15(토) 09:00 [08:30까지 고사장 입실 완료]	• 대상: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한의예과] • 대면 면접(서울캠퍼스에서 시행) • 수험표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27쪽 <면접고사 관련 유의사항> 참조

라. 북한이탈주민 [전 모집단위]

구분	일시	비고
비대면 면접 질문 사전공개	2023. 7. 10(월)	• 경희대학교 입학처(iphak.khu.ac.kr)
비대면 면접고사 (동영상 업로드)	2023. 7. 11(화) 10:00~13(목) 17:00	• 대상: 북한이탈주민[전 모집단위] • 비대면 면접 (동영상 업로드) • 캠퍼스 방문 면접 불가 • 27쪽 <면접고사 관련 유의사항> 참조 • 지정된 기한 내 영상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접고사 결시로 불합격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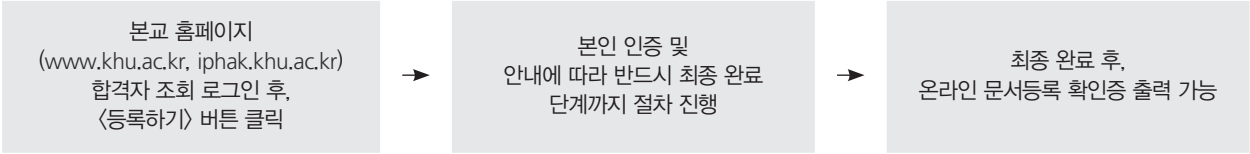
※ 전형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든 입학 관리는 지원한 캠퍼스별로 시행합니다.

3. 합격자 발표

가. 최초 합격자 발표: 2023. 8. 25(금) 18:00

나. 최초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 방법

- 1) 등록 기간: 2023. 12. 18(월)~21(목) 13:00
2) 등록 방법: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한 등록
※ 온라인 문서등록은 별도의 예치금 납부 없이 온라인 문서등록 절차를 통해 경희대학교에 등록할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입니다.



- 3)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및 입학처 홈페이지(www.khu.ac.kr, iphak.khu.ac.kr)에서 합격증 출력 및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서등록 기간에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 온라인 문서등록'을 완료하더라도 본 등록금 납부 기간[2024. 2. 7(수)~13(화) 13:00]에 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 후 등록포기자'로 처리하오니 반드시 해당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 온라인 문서등록, 본 등록금 납부 일정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당 일정을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 총원 합격자 발표

구분	발표 일시
1차 총원 합격자 발표	2023. 12. 22(금)
2차 총원 합격자 발표	2023. 12. 23(토)
3차 총원 합격자 발표	2023. 12. 26(화)
최종 총원 합격자 통보 마감	2023. 12. 28(목) 18:00

라.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에서 각각 실시합니다.
2)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3)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전형 및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한의예과의 경우,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미등록자 및 등록포기자(환불자)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원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전형은 계열별 모집으로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 최대인원 이내에서 계열별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한의예과의 경우, 학과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5) 최초합격자, 1차 총원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경희대학교 홈페이지(iphak.khu.ac.kr, www.khu.ac.kr)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6) 2차 총원합격자부터는 개별 통보 및 경희대학교 홈페이지(iphak.khu.ac.kr, www.khu.ac.kr)에 공지합니다.
7)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형 기간(2023. 7~2024. 2) 중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나 E-mail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개인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8) 만약 유선을 통한 총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총원합격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해 모집인원 내로 선발합니다(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참조).
10)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본교의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일정 안내

- 가. 제출방법: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우편 제출
- 나. 제출기간: 2024. 2. 23(금) [2024. 2. 23(금) 등기소인까지 인정]

구분	제출서류
해외고 졸업예정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졸업 관련 서류: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3.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발급일 전일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함[졸업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원서접수 이후 최종 학기를 해외에서 재직·재학·체류해야 「3년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2023년 7월 원서접수 시: 2년 6개월 충족 → 2023년 12월~2024년 2월 졸업 시: 3년 충족)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졸업 관련 서류: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해외발급 서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해외파견 재직자, 현지취업자)(해외발급 서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 해외 근무 국가, 근무 기간 반드시 명기 4. 해외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사본(현지 취업자), 해외 세금납부증명서/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현지 자영업자) (해외발급 서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지원자) (해외근무/재학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졸업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원서접수 또는 지원자격심사 기간에 요청받아 제출한 서류 중 부득이하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 입학원서 1부(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받은 원본 서류

※ 추가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학기간, 졸업일, 근무국가, 근무기간, 출입국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발급 서류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지원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등록자 필수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다. 유의사항: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입학처에서 개별적으로 공지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모집요강,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로 인한 입학취소 등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KHU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전공	계열	캠퍼스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자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전체	최대 인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40	5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문	서울
	영어영문학과		4					
	응용영어통번역학과		4					
	사학과		4					
	철학과		3					
자율전공학부			7			글로벌리더전공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4					
	행정학과		6					
	사회학과		3					
	경제학과		8					
	무역학과		7					
	미디어학과		7					
경영대학	경영학과		18					
	회계·세무학과		6					
	빅데이터응용학과		2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과		9					
	조리&푸드디자인학과		3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6			관광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2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3					
	주거환경학과		3					
	의상학과		3					
	식품영양학과	3						
이과대학	수학과	4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연		
	물리학과	4						
	화학과	4						
	생물학과	5						
	지리학과	5						
	정보디스플레이학과	5						
	약학대학	한약학과			4			
약과학과		3						
한 의과대학	한 의예과	－		약간명 (2명 이내)	－			
합 계		47		－	－			

※ 모든 입학 관리는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속한 캠퍼스별로 진행됩니다.
※ 계열별로 모집하며, 학과별 모집인원은 표에 기재된 학과별 최대인원 이내로 선발합니다.
※ 2024학년도 본교 대학 편제 개편 등에 따라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세부전공, 모집인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 전공 배정기준과 시기는 대학(학부/과) 내규로 정하며, 모집단위의 세부 전공별 배정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고려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전과 관련 사항은 본교 <전과운영지침>을 따릅니다.
※ 한의예과는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선발합니다.
※ 약과학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는 모든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전공	계열	캠퍼스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자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전체	최대 인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5	15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연	국제
	산업경영공학과			6					
	원자력공학과			4					
	화학공학과			7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6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6					
	건축공학과			6					
	환경학및환경공학과			4					
	건축학과(5년제)			4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공학부	전자공학과	13						
		반도체공학과	-						
	생체의공학과		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8						
		인공지능학과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5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3						
	응용물리학과		3						
	응용화학과		4						
	우주과학과		4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공학과		5						
	식품생명공학과		4						
	한방생명공학과		2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2						
국제대학	스마트팜과학과		4						
	국제학과		12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3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문		
	스페인어학과		3						
	러시아어학과		3						
	중국어학과		4						
	일본어학과		4						
	한국어학과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6			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3	제한없음	제한없음		예술 · 체육		
	시각디자인학과		3						
	환경조경디자인학과		3						
	의류디자인학과		3						
	디지털콘텐츠학과		3						
	도예학과		3						
	연극영화학과		3						
	PostModern음악학과		3						
체육대학	체육학과		7						
	스포츠의학과		4						
	골프산업학과		3						
	스포츠지도학과		8						
	태권도학과		7						
합 계			47	-	-				

※ 국제학과는 모든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 전자정보공학부 반도체공학과는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합니다(본교에서 별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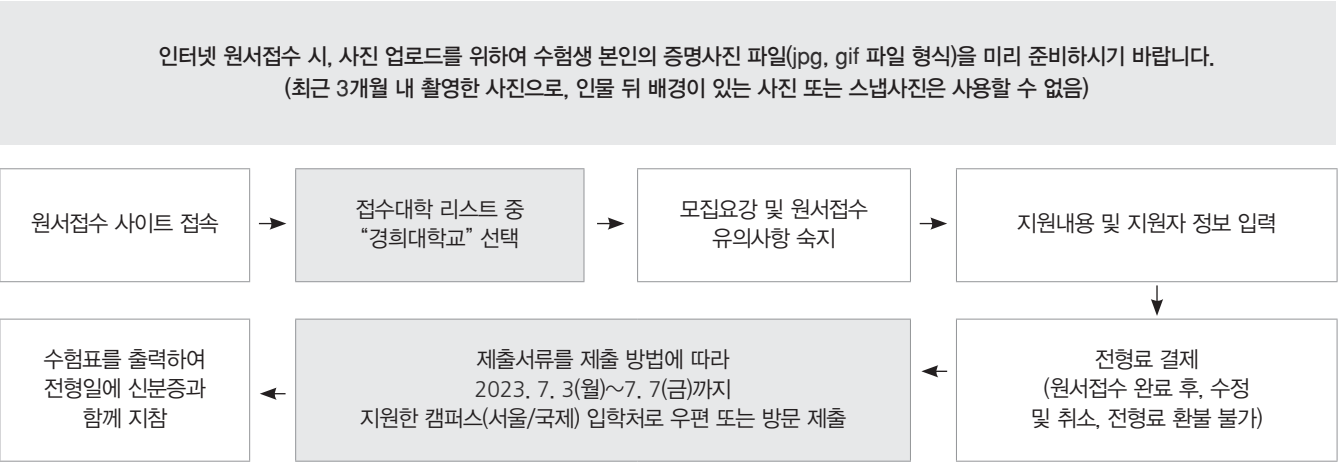
1. 원서접수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가. 접수기간: 2023. 7. 3(월) 10:00~5(수) 18:00

나.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다. 접수사이트: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절차]



※ 입학원서접수 마감시한[2023. 7. 5(수) 18:00] 정각에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오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 시한까지 원서접수를 못 하는 경우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지원자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하니 미리 증명사진 파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2)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 3)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사항 변경,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 등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4) 지원자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입학원서 접수 오류 등은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5) 원서접수 시,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하게 기입 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6)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형기간(2023. 7~2024. 2) 중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나 E-mail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7) 지원신청서 및 입학원서의 학력사항(초·중·고·대학 전과정)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8)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번호 기재, 전화 연락 불통 등 연락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9)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0)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전형료

1) 결제금액		
전형유형	전형료	비고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150,000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150,000원(결제금액 0원)	면제

2) 전형료 결제방법: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내 결제방법 참조

나. 전형료 환불 안내

•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사항의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 작성,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기간[2023. 7. 3(월)~7(금)] 내에 '입학원서'(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와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로 우편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2023. 6. 19(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구분	해당 자격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추가제출]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발급)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1부

-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③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
- ④ 기타 전형료 반환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3(입학전형료)에 따릅니다.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필답 또는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형료를 환불 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작성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전형료 환불 대상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심사결과 지원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성적 미달에 의한 불합격인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전형료 비례 환불

- ①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4. 4. 30(화)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 ②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③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KHU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1. 지원자격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인정기준	
학력요건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 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4년 2월 29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자격요건	해외 재직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해외근무자와 학생 및 배우자가 함께 체류하며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근무자로 근무해야 함
	해외 재학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안에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교과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체류	•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서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학생은 함께 체류하여야 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절사

교육부 공문에 의한 인정 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한 해외 체류, 재학, 재직의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예외인정(참작) 사유 증빙(공적 자료)을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해외근무기간 인정기준

- 1)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근무해야 함
※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의 증명서에 기재된 해외 근무 기간만 근무 기간으로 인정함
- 2)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해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지원자격 해당 기간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 전: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
 - 이혼 후: 학생과 부모 중 1명(해외근무자인 부 또는 모)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
- 추가 제출서류
 -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부·친모의 이혼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 사망한 경우

- 추가 제출서류
 -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나. 해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1) 전체 이수 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 제도
- ①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총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적용)
 - ②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월반 등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 학기 중복
- ①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② 중복학기 등의 판단은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 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중복 학기 판단 예시]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 1개 학기. 총 23학기 인정으로 지원 자격 충족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는 G4-2로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은 G9-1로 대체 가능

G11-1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3) 그 외 사항
- ①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대한민국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② **해당 학기에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③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다. 해외체류일수 인정기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며 입국일은 제외함

라.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 외국학교 재학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준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2)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단, 정규과정과 여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 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 3) 교육부 공문에 의한 인정 사유인 COVID-19로 인한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대학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함
- 4)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의 경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단,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의 지역 상황(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제3국 수학 인정 여부를 판단함
※ 사유서[본교 양식 31쪽 참조]와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제출
- 5)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의 경우,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한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에서 연속으로 재학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나.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

과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 2~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 8~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 11~Year 13 과정

3. 전형방법

가. 필답고사(100%):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

나. 과목별 반영비율

모집계열	전형방법	선발비율	구분	과목별 반영비율			
				국어	영어	수학	계
인문, 예술·체육계열	일괄합산	100%	비율	40%	60%	—	100%
			배점	400점	600점	—	1,000점
자연계열	일괄합산	100%	비율	—	40%	60%	100%
			배점	—	400점	600점	1,000점

다. 필답고사 일정

1) 고사일시 및 장소

구분	고사일시	고사장소
인문, 예술·체육, 자연계열	2023. 7. 15(토) 09:00~11:30 [08:30까지 고사장 입실 완료]	모집단위가 소속된 캠퍼스 [고사장 확인: 2023.7.13(목) 18:00] (입학처 홈페이지)

2) 계열별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구분	인문, 예술·체육계열	자연계열
과목 및 반영비율	국어 40% + 영어 60%	영어 40% + 수학 60%
형식	객관식 4지 선다형	객관식 4지 선다형
문항 수	국어 40문항, 영어 40문항	영어 40문항, 수학 30문항
고사시간	과목별 60분	과목별 60분
출제범위	고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 • 국어: 국어, 독서, 문학(고전문학 제외) 과목을 바탕으로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함 • 영어: 영어, 영어, 영어Ⅱ 과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수학 하는데 필요한 영어의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항을 출제함 • 수학: 수학, 수학, 수학Ⅲ 과목을 바탕으로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고등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 • 영어: 영어, 영어, 영어Ⅱ 과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수학 하는데 필요한 영어의 기초적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항을 출제함 • 수학: 수학, 수학, 수학Ⅲ 과목을 바탕으로 계산, 이해,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 교육과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www.ncic.re.kr) 참조

라. 동점자 처리기준

단계	계열	처리 기준
일괄합산	인문, 예술·체육계열	1. 영어성적 총점 상위자 2. 영어 고배점 문항 합산성적 상위자 3. 국어 고배점 문항 합산성적 상위자
	자연계열	1. 수학성적 총점 상위자 2. 수학 고배점 문항 합산성적 상위자 3. 영어 고배점 문항 합산성적 상위자

※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 합산성적은 배점이 높은 문항의 합산 순으로 순차 적용합니다.

※ 최종 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자 전체

1)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우편 제출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

–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네오르네상스관 2층)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입학처(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2023. 7. 6(목) 등기소인까지 인정
-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우편 봉투라벨을 출력하여 우편 봉투에 부착 후, '사진이 인쇄된 입학원서 1부'와 '제출서류'를 제출

② 방문 제출

- 제출 기간: 2023. 7. 3(월) 10:00~7(금) 17:00
※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로 제출

※ 국내 발급서류의 경우, 2023. 6. 19(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해외 발급서류의 경우**, 발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원본(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포함) 서류제출 원칙**

- 영어, 한국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없이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집게로 집어서 제출. 단,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받은 서류가 묶여 있는 경우, 훼손하지 말고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제출. 오른쪽 상단에 서류명 기재

※ 아래의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바람

서류 순서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1	입학원서	필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 완성 • 2023. 7. 5(수) 18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2	지원신청서	필수	
3	지원자격확인표	필수	
4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필수	• 고교 졸업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 등록 시 졸업증명서 제출 (15쪽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참조)
5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필수	• 3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 기간 및 직전, 직후 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표 일체 제출. 학기 개시일, 학기 종료일 등 명시. 연도별 또는 학기별 각 1매 • [제출 예] 2019~1학기~2021~2학기까지가 3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 기간일 경우, 2018~2학기~2022~1학기 학사일정표 일체 제출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함(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A4사이즈]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 학기 종료일 형광펜 체크
6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필수	• 재학기간 연, 월, 일 필수 표기.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재학기간 표기 필수)
7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필수	•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 제출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학기별 성적 표기 필수)
8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기준)	필수	• 지원자 기준 발급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제출(10쪽 참조) • 부 또는 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10쪽 참조)
9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지원자)	필수	•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해외 근무/재학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
10	사실 증명 발급·열람신청서 (부, 모, 지원자)	필수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다운로드 작성하고 부, 모, 학생 본인 각각 작성 및 서명 후 제출
11	여권 사본 (부, 모, 지원자)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기록에 해당하는 모든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제출 • 일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제출(정부24,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발급 가능)

서류 순서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1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 거주 사실 증명 서류(부, 모, 지원자)	필수	- 재외 공관 및 외교부 발행 -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 발급 ※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목록 중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본교 양식의 사유서 (31쪽) 1부 제출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체류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체류 국가 내 체류자격이 명시된 사증(비자)란 - 해외 체류 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체류국 임대차 계약서 - 체류국 현지 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 사실 증명 -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의료 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 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13	해외 파견 재직자	재직(경력) 증명서	해당자 필수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14		해외직접투자승인서 (허가서, 신고서)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해당자 필수	상사 주재원 필수 제출
13	현지 자영업자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자 필수	해외발급 서류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필수
14		세금 납부 증명서	해당자 필수	지원자격 인정 3년 기간 전체 대상, 해외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 사본(영수증)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필수)
13	현지 취업자	재직(경력) 증명서	해당자 필수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 해외발급 서류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필수
14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해당자 필수	해외발급 서류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필수
15		법인세 납부 이력 사본	해당자 필수	- 지원자격 인정 3년 기간 전체 대상,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사본 - 법인세 납부 이력 제출 불가능한 경우 현지 취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 - 해외발급 서류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필수
16	학력 조회 동의서		해당자 필수	- 재학한 모든 해외 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u>학생 본인 서명</u> 후 제출
1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부, 모)		필수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u>부, 모</u> 각각 작성하고 <u>서명</u> 후 제출
18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필수	사유서 제출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 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교 사유서 양식 31쪽 참조)

나.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1) 제출방법: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우편 제출 [2024. 2. 23(금)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2) 제출기간: 2024. 2. 23(금)까지

구분	제출서류
해외고 졸업예정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졸업 관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3.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발급일 전일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졸업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원서접수 이후 최종 학기를 해외에서 재직·재학·체류해야 「3년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2023년 7월 원서접수 시: 2년 6개월 충족 → 2023년 12월~2024년 2월 졸업 시: 3년 충족)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졸업 관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해외파견 재직자, 현지취업자) ※ 해외근무국가, 근무기간 반드시 명기 4. 해외 재직회사 법인세납부이력사본(현지 취업자), 해외 세금납부증명서/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현지 자영업자)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지원자) (해외근무/재학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졸업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원서접수 또는 지원자격심사 기간에 요청받 아 제출한 서류 중 부득이하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 입학원서 1부(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받은 원본 서류

- ※ 추가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학기간, 졸업일, 근무국가, 근무기간, 출입국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해외 발급서류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지원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지원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종 등록자 필수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1. 지원자격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인정기준
학력요건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 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4년 2월 29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 국적은 관계하지 않음
체류요건	•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해, 실제 해외 재학 여부를 판단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체류 사실인정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국제처 글로벌 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합니다.

[국제처 글로벌 입학팀(홈페이지: <http://oiak.khu.ac.kr>) ☎ 02-961-9286(서울) 031-201-3961(국제)]

교육부 공문에 의한 인정사유(COVID-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로 인한 해외체류, 재학의 예외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예외인정(참차) 사유 증빙(공적 자료)을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해외재학기간 산정기준

1)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제도

- ① 부정·편입·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총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적용)
- ②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월반 등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학기 중보

- ①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② 중복 학기 등의 판단은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그 외 사항

- ①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② 해당 학기에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③ 그 외 기타 사항은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나. 학제별 지원 자격 인정 기준

- 1)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2) 해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3)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를 재학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4)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 외국학교 재학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준

-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2)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단,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 3) 교육부 공문에 의한 인정 사유인 COVID-19로 인한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대학이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함

나.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 단,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과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6학년 과정	Year 2~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9학년 과정	Year 8~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12학년 과정*	Year 11~Year 13 과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1학년제 이하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으로 인정함

3. 전형방법

가. 면접고사(100%):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

모집계열	전형방법	선발비율	구분	면접고사	계
전 계열	일괄선발	100%	비율	100%	100%
			배점	1,000점	1,000점

나. 면접고사 방식

1) 비대면면접: 전 모집단위(한의예과 제외)

- ① 동영상 업로드 방식
- ② 면접 질문 사전공개: 2023. 7. 10(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③ 동영상 제출(동영상 업로드): 2023. 7. 11(화) 10:00~13(목) 17:00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정해진 기간 내 동영상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결시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
- ④ 영상 면접시간: 4분 이내
- ⑤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50%)	• 가치관(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 인성(도덕성, 사회성, 리더십 등)
학업적성(한국어 능력)(50%)	• 지원학부(과) 관련 학업적성 및 기초소양 •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⑥ 평가방법

-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한국어로 답변**(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답변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지원자가 영상으로 직접 녹화하여 정해진 기간 내, 본교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제출된 녹화영상을 통해 면접위원이 평가

2) 대면면접: 한의예과

- ① 면접일시: 2023. 7. 15(토) 09:00 (08:30까지 고사장 입실 완료)
- ② 면접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 ③ 면접고사장 확인: 2023. 7. 13(목) 18:00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④ 면접시간: 10분 내외
- ⑤ 면접형식: 개인면접[면접위원 2인: 지원자 1인], 한국어 면접으로 실시
- ⑥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50%)	• 가치관(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 인성(도덕성, 사회성, 리더십 등)
학업적성(한국어능력)(50%)	• 지원학부(과) 관련 학업적성 및 기초소양 •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다.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계열	처리 기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 계열	1. 인성 면접 성적 총점 상위자

※ 최종 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지원자 전체

1)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우편 제출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

–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네오르네상스관 2층)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입학처(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2023. 7. 6(목) 등기소인까지 인정
-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우편 봉투라벨을 출력하여 우편 봉투에 부착 후, ‘사진이 인쇄된 입학원서 1부’와 ‘제출서류’를 제출

② 방문 제출

- 제출 기간: 2023. 7. 3(월) 10:00~7(금) 17:00

※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로 제출

※ 국내 발급서류의 경우, 2023. 6. 19(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해외 발급서류의 경우**, 발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원본(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포함) 서류제출 원칙**

- 영어, 한국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받아 제출
-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없이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집게로 집어서 제출. 단,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받은 서류가 묶여 있는 경우, 훼손하지 말고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제출. 오른쪽 상단에 서류명 기재

※ 아래의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바람

서류 순서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1	입학원서	필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 완성 • 2023. 7. 5(수) 18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2	지원신청서	필수	
3	지원자격확인표	필수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필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 시 졸업증명서 제출 (20쪽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참조)
5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필수	• 재학 기간 연, 월, 일 필수 표기.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재학 기간 표기 필수)
6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필수	•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 제출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학기별 성적 표기 필수)

서류 순서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7	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	필수	•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발급일 전일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복수국적자는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에 해당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8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지원자)	필수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u>서명</u> 후 제출
9	여권 사본(지원자)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기록에 해당하는 모든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제출 • 복수국적자는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에 해당하는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제출 • 일부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제출(정부24, 전국 여권 사무대행기관 발급 가능)
10	학력 조회 동의서	해당자 필수	• 재학한 모든 해외 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u>학생 본인 서명</u> 후 제출
11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필수	• 사유서 제출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고 사유서 양식 31쪽 참조)

나.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 1) 제출방법: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우편 제출 [2024. 2. 23(금)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2) 제출기간: 2024. 2. 23(금)까지

구분	제출서류
해외고 졸업예정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졸업 관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3.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발급일 전일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졸업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원서접수 또는 지원자격심사 기간에 요청받 아 제출한 서류 중 부득이하게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 입학원서 1부(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받은 원본 서류

※ 추가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학기간, 졸업일, 근무국가, 근무기간, 출입국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발급서류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지원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등록자 필수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1.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4년 2월 29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고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전형방법

가. 면접고사(100%):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

나. 면접고사 방식

비대면면접: 전 모집단위

- ① 동영상 업로드 방식
- ② 면접 질문 사전공개: 2023. 7. 10(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③ 동영상 제출(동영상 업로드): 2023. 7. 11(화) 10:00~13(목) 17:00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정해진 기간 내 동영상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결시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
- ④ 영상 면접시간: 4분 이내
- ⑤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내용
인성(50%)	• 가치관(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 인성(도덕성, 사회성, 리더십 등)
학업적성(한국어능력)(50%)	• 지원학부(과) 관련 학업적성 및 기초소양 • 의사소통능력,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⑥ 평가방법

-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한국어로 답변(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답변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지원자가 영상으로 직접 녹화하여 정해진 기간 내, 본고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제출된 녹화영상을 통해 면접위원 평가

다.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계열	처리 기준
북한이탈주민	전 계열	1. 인성 면접 성적 총점 상위자

※ 최종 단계까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고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지원자 전체

1) 제출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우편 제출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

–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네오르네상스관 2층)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입학처(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 2023. 7. 6(목) 등기소인까지 인정
- 우편 제출 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우편 봉투라벨을 출력하여 우편 봉투에 부착 후, '사진이 인쇄된 입학원서 1부'와 '제출서류'를 제출

② 방문 제출

- 제출 기간: 2023. 7. 3(월) 10:00~7(금) 17:00

※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제출처: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로 제출

※ 국내 발급서류의 경우, 2023. 6. 19(월)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해외 발급서류의 경우**, 발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원본(아포스티유/영사 확인 포함) 서류제출 원칙**

- 영어, 한국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원본과 번역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받아 제출
-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없이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집게로 집어서 제출. 단,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받은 서류가 묶여 있는 경우, 훼손하지 말고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제출. 오른쪽 상단에 서류명 기재

※ 아래의 '서류 순서'에 맞춰 제출 바람

서류 순서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1	입학원서	필수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 완성 2023. 7. 5(수) 18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후,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출력물'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2	지원신청서	필수	
3	지원자격확인표	필수	
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인터넷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제출
5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필수	- 시·군·구청 발급 - 해당자에 한하며, “대학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경우,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 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3. 6. 1(목)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부터 인정
6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해당자 필수	- 교육청 발급 - 초/중/고등학교 중, 북한 소재 학교에서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제출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필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 시 졸업증명서 제출 (23쪽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참조)

서류 순서	서류명	필수 여부	비고
8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해당자 필수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 성적증명서
9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 필수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10	학력 조회 동의서	해당자 필수	- 재학한 모든 해외 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또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고 <u>학생 본인 서명</u> 후 제출
11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필수	사유서 제출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교 사유서 양식 31쪽 참조)

나. 최종 등록자 추가 제출서류

1) 제출 방법: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우편 제출 [2024. 2. 23(금) 등기소인분까지 인정]

2) 제출 기간: 2024. 2. 23(금)까지

구분	제출서류
해외고 졸업예정자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졸업 관련: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 졸업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불필요
원서접수 또는 지원자격심사 기간에 요청 받아 제출한 서류 중 부득이하게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 입학원서 1부(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받은 원본 서류

※ 지원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지원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외 발급서류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최종 등록자 필수 추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가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공통 유의사항]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해 지원자격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2023. 6. 19(월)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원본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사관 또는 본교에서 직접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또는 본교 입학처의 원본대조필만 인정함).
-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후, 원본과 번역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 한국학교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한 재외국민은 해당 교육기관 발급 서류에 한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각 서류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지원자 정보와 제출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학원서 1부와 주민등록표초본 1부를 서류제출 기간[2023. 7. 3(월)~7(금)] 내에 지원한 캠퍼스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상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서류 및 원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발급기관을 통해 본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변조, 위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 결격 처리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국내·외 학교에서 조기 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 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본교 양식 31쪽 참조)와 증빙서류 [해당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발급서류 관련 안내]

• 해외에서 발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해외근무자 경력증명서, 해외근무자 법인등록증, 해외근무자 사업자등록증명서, 해외근무자 개인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가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 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②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발생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출입국심사와-8354, '07.8.13)

2.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1) 공문서(국·공립학교 등)



2) 사문서(사립학교 등)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중국 내 학력 취득자]

중국 중학교·고등학교(일반계 고등학교) 관련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CHSI)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로 제출 가능

1. 인증기관 안내

- 인증기관명: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
- 홈페이지: <http://www.chsi.com.cn>
- 주소: 北京市海淀区北三环西路甲18号大钟寺中坤国际广场E座10006室(우편번호: 100098)
- 이메일: kefu@chsi.com.cn
- 전화: +86-10-82199588
-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만 상기의 학위 인증보고서로 인정 가능. 중등직업학교 등 기타고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받은 서류제출

2. 한국에서 인증보고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http://www.cis.or.kr/main.htm> → 중국학력인증
- 이메일: cis88@cis.or.kr
- 전화: 02-554-2688

※ 발급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1. 고등교육법 기본사항에 따른 유의사항

가. 수시모집 지원횟수 및 복수지원 허용 범위

- 1)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은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캠퍼스 간 중복 지원 불가).
- 3)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횟수로 산정합니다.
- 4)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순서 상 6회 후의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나. 복수지원 금지

수시모집 전형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다. 합격자 등록 및 이종등록 금지

- 1) 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 및 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이를 등록 및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수시모집에서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발표한 충원합격도 포함)한 자는 반드시 하나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3)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해당 대학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등록금 환불 요청은 해당 기간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신청함].

2. 고사 유의사항

가. 필답고사 관련 유의사항

- 1) 필답고사 장소는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고사일 전에 미리 게시합니다[2023. 7. 13(목) 18:00 예정].
- 2) 수험생은 고사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사진이 함께 인쇄된 수험표를 고사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접수 완료 확인 > 출력물”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 시험 당일 규정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을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고사 중에 통신·스마트기기 등 사용이 불가하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 확인 불가
- 3) 고사 시간 중에 지원자 전체를 촬영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본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입학원서 및 수험표에 인쇄된 사진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증명사진이 아닌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아이패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일체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
- 6) 필답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7) 시험 중 부정행위(대리시험 등)가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발견 시에도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나. 면접고사 관련 유의사항

- 1)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며 “비대면 면접”[전 모집단위(한외예과 제외)]으로 진행합니다. 한외예과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은 면접고사를 실시하며, “비대면 면접”[전 모집단위]으로 진행합니다.
- 3) 비대면 면접의 경우,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원자가 영상으로 직접 녹화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제출 기한[2023. 7. 11(화) 10:00~13(목) 17:00]내에 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은 경우, 결시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대면면접으로 진행되는 한외예과의 경우, 고사장 확인 및 면접 관련 세부사항은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2023. 7. 13(목) 18:00 공지 예정입니다.
 -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접수 완료 확인 > 출력물”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 시험 당일 규정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을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5)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를 노출하거나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교복, 교표) 착용 및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 등을 노출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6) 시험 중 부정행위(대리시험 등)가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발견 시에도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7) 면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부정행위자의 처리

- 1)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사항 누락,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3) 위의 '2'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의 '2'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1) 모든 입학전형은 해당 캠퍼스(서울/국제) 별로 시행합니다.
- 2) 본교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3) 입학일(2024. 3. 1)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4) 입학전형 자료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및 평가 자료, 평가내용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 고지 하지 않으므로 원서접수 전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6) 기타 사항은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1544-282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7)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사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1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전형에서 해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인정 및 산정기준

CASE 1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 학사일정: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재학기간: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재학 학생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원칙: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를 1개 학년으로 함
G8(2018.8.1~2019.7.31), G9(2019.8.1~2020.7.31), G10(2020.8.1~2021.7.31)
- 예외: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상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학생의 재학기간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며, 체류일수 및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재직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기준: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유형 1)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재학기간 인정기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 재학기간: G8(2018.8.1~2019.7.31), G9(2019.8.1~2020.7.31), G10(2020.8.1~2021.7.31)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2018.8.1~2021.7.31 [근무기간 통산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적격**: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과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이 일치함

(유형 2) 재직기간 내 재학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

- ◎ 재학기간 인정기준: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학기간: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2018.8.1~2021.7.31 [근무기간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적격**: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이 온전히 포함됨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

- ◎ 재학기간 인정기준: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학기간: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2018.6.24~2021.6.23 [근무기간 3년(1,095일) 이상 충족]
→ **지원자격 적격**: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이 온전히 포함됨

(유형 3) 재직기간과 재학기간이 불일치 하는 경우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

- ◎ 재학기간 인정기준: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학기간: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2018.6.13~2021.6.12 [근무기간 3년(1,095일) 이상]
→ **지원자격 부적격**: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이 온전히 포함되지 않아 부적격

재직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6개 학기 재학기간[학기 개시일~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

- ◎ 재학기간 인정기준: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 재학기간: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2018.10.3~2021.10.2 [근무기간 3년(1,095일) 이상]
→ **지원자격 부적격**: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이 온전히 포함되지 않아 부적격

체류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해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기준: 학기개시일부터 재학이 시작된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약 365일)
– 재학기간[G8(2018.8.1~2019.7.31), G9(2019.8.1~2020.7.31), G10(2020.8.1~2021.7.31)]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체류해야 함
※ 학생이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이수했다더라도 체류일수의 기준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CASE 2 중간 편입한 경우

- 학사일정: G8(2018.8.1~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재학기간: G8(2018.10.15~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2018.10.15~2021.10.14
*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은 매 학년 재학기간 동안 체류기간 기준을 충족함
* 상기 기간 외에는 해외체류 및 근무가 없음

재학 학생의 재학기준 인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G8 중간에 편입학하여 추가로 G11 2개월 14일 재학이 필요함
G8(2018.10.15~2019.6.23), G9(2019.8.1~2020.6.23), G10(2020.8.1~2021.6.23), G11(2021.8.1~2021.10.14)

재직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 산정기준

- 기준: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 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2018.10.15~2021.10.14

체류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의 해외체류일수 산정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체류
 - i) (2018.10.15~2019.10.14), (2019.10.15~2020.10.14), (2020.10.15~2021.10.14)
 - ii) G8(2018.10.15~2019.7.31), G9(2019.8.1~2020.7.31), G10(2020.8.1~2021.7.31), G11(2021.8.1~2021.10.14)
- ※ i) 또는 ii) 중 해외근무자,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Q2 전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월반하여 12년(총 24학기)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총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전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이수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공식적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

Q3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해외 초등학교를 신입학 하기 전, 국내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외국학교 재학 중에 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미인정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편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초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함(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의미)

Q4 해외근무자의 배우자가 학생 재학기간 시작 한 달 후에 해외에서 체류를 시작하는 경우

- 학기개시일(편입학의 경우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마다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 체류해야 함
- 해외근무자의 배우자는 매 학년마다 해외체류일수 충족을 전제로 학생의 재학시작 시점보다 늦게 체류를 시작할 수 있으나,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Q5 (초등학교) 성적 자료를 일괄 폐기 처분하는 특정 국가(일본 등)의 경우,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방법

- 제출 불가능 사유가 기재된 사유서(본교 양식)와 해당국(초등학교)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학기간이 표기된 증명서) 제출

Q6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성적/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가능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기별 성적/재학기간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Q7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 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사 유 서

[※ 해당자 작성]



전형명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사유명 (해당사항에 체크)	☐ 학기결손/중복 ☐ 월반 ☐ 휴학 ☐ 조기 졸업 ☐ 국내 체류 ☐ 제 3국 수학* ☐ 기타		
세부내용			

위 기재 사유는 틀림이 없으며, 허위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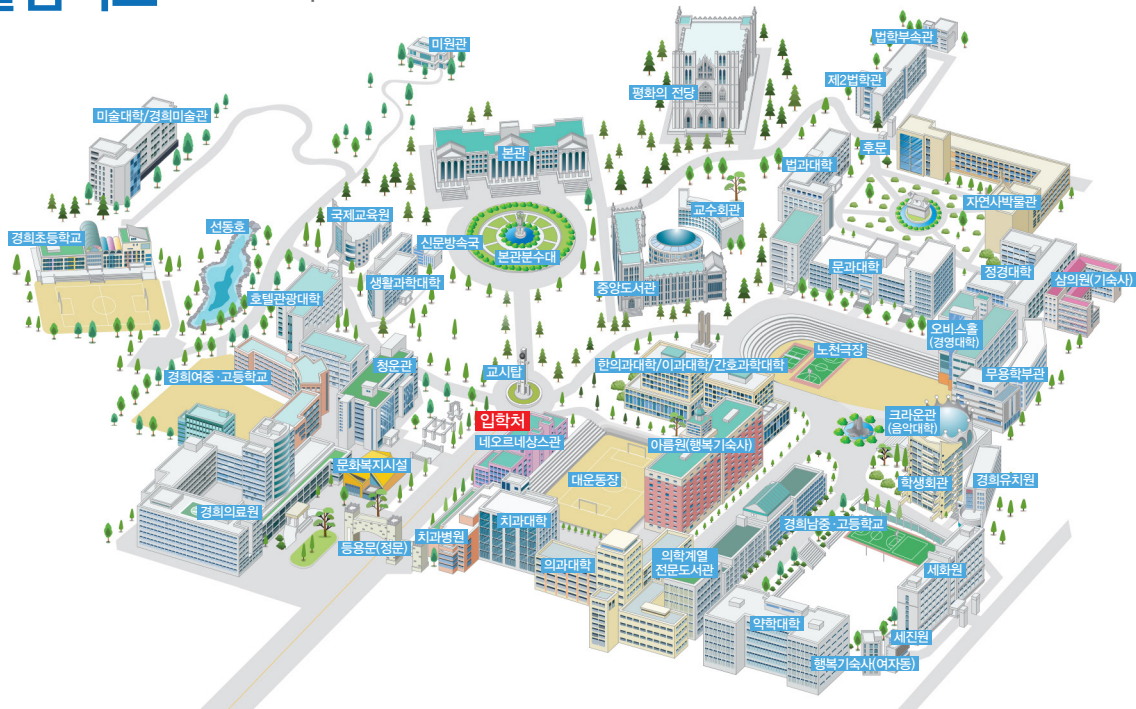
2023년 월 일

※ 사유서 제출 방법

1.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제3국 수학] 재외국민 자격 기간 중, 해외근무자의 근무 국가와 학생의 수학 국가가 다를 경우 각각의 국가명과 해당 국가에서의 수학기간(학년/학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Seoul Cam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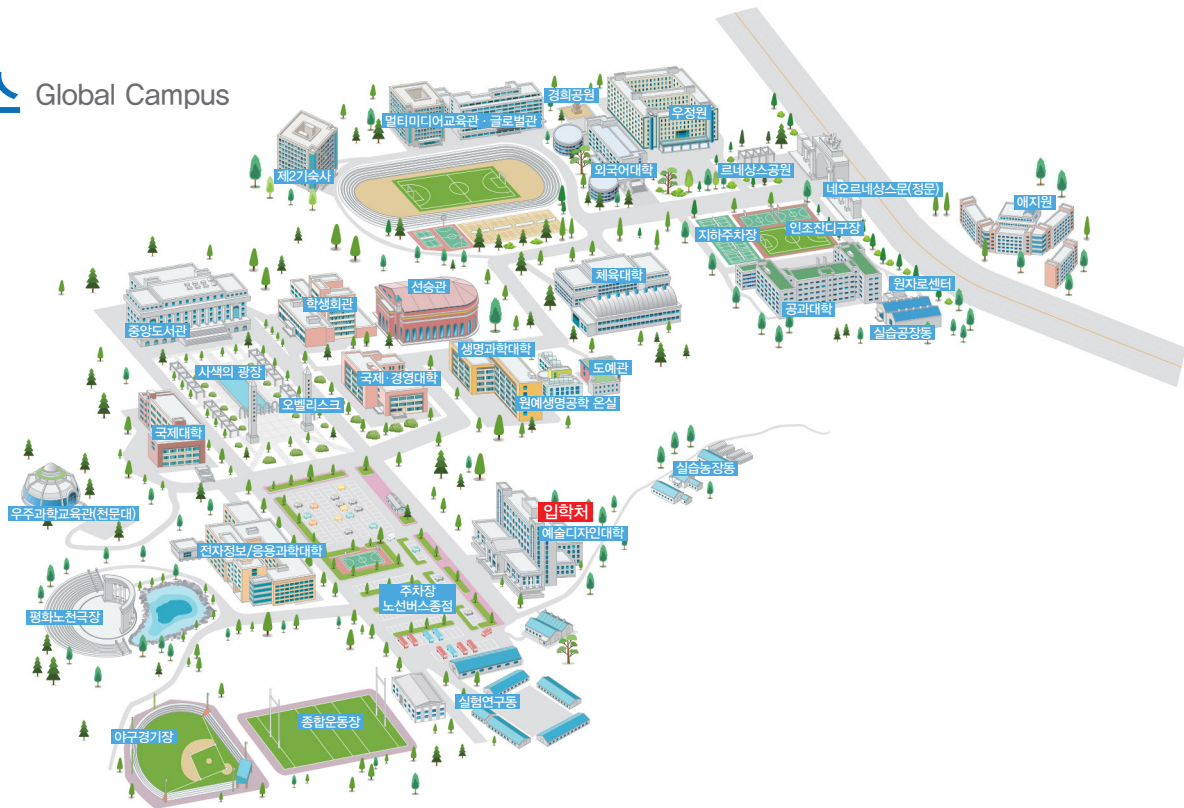


교통안내

- 버스 1222(초록), 273/201(파랑), 동대문 01/02(초록)
-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회기역 하차(마을버스 1번 환승)

국제캠퍼스

Global Campus



교통안내

- 버스 강남역: 1550-1, 5100 잠실역·강변역: 1112 사당역: 7000 M5107번: 서울역환승센터 ↔ 명동국민은행 앞 ↔ 경희대
-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 하차(9번 버스 환승 또는 도보 10분)

